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389호

2026년 대전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2026년 마을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1. 19.

대전광역시



I 공모개요

- (사업명)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 (공고기간) '25. 11. 19.(수) ~ '25. 12. 5.(금)
- (접수기간) '25. 11. 28.(금) ~ '25. 12. 5.(금) / 소재지 관할 구청
- (선정규모) 미정 *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예정
 - * 행정안전부 심사결과에 따라 마을기업 최종선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예비) 지원없음, (신규)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 * 마을기업 회계비목: **[붙임 1]**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 기준 참고
 - ** 마을기업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사업기간) 선정 마을기업별 약정체결일부터 ~ 2026. 12. 31.



II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공통 지정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지정 요건

1) 공동체성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 동일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동일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2) 공공성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마을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권장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3) 지역성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상 해당지역 주민이거나, 근로자이어야 함
- 회원의 70% 이상[시군구 마을기업은 80%(인구감소지역은 70%)]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을 포함해야 함

4) 기업성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은 약정체결 후 5개월 이상 경과해도 가능)



예비 마을기업

- (신청자격)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미설립 시 지정 취소 가능
- (지정기간)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 * 자치단체 재심사·지정으로 1회 연장 가능
 - * 단, 예비 마을기업 지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자치단체에서 통보, 만료 2개월 전까지 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자치단체별 재심사·지정으로 연장 가능
 - * 연장 기간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정하며 연장 횟수는 1회에 한함
- (혜택사항) 신규 전환 시 가점(3점) * 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 (신청자격) 의무교육 이수(1회차 입문교육, 2회차 전문교육) 및 지정요건 충족한 1~3회차(신규·재지정·고도화)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청년마을기업은 10%이상)

■ 관련 특례(청년마을기업) ■

- > (배경) 마을기업에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 > (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지역주민 비율 50% 이상+청년비율 30%~50%
- > (특례) 자부담 경감(20%→10%), 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3점)

III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조



IV 신청서 접수안내

○ (신청서 접수처) 소재지 관할 구청 / 방문접수

자치구별 접수부서		연 락 처	접수방법
동 구 청	일자리경제과	251-4633	방문접수
중 구 청	자치분권과과	606-6462	
서 구 청	전략사업과	288-2442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611-6029	
대덕구청	경제과	608-6926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기본 서류	공통	(마을기업)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회원 명단(서식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3),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③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회차별)	1회차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2회차	전문교육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3회차	전문교육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 2·3회차 마을기업 지정 신청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보조금 집행 실적 등을 확인·검토(e-나라도움)하고 그 결과를 ‘적격검토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기타 증빙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1회차 입문교육, 2회차 이상 전문교육) 이수하지 못한 경우, 대전시 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심사 제외)

※ 참고: 예비·신규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되 자부담 한도는 정하지 않음(보조금 지원 없음)
단,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으로 작성하도록 함
- 사후 기업평가(실태조사 등)를 통해 부적정*할 경우 지정 취소 예정

* 사업 계획과 상이하고, 부적합한 사업 추진으로 판단된 경우 등



V 추진절차 및 결과통보

구분	공고/신청접수	적격검토	지정요건 등 심사	최종결과
일정	市 / 區 (공고: '25.11.19~12.5.) (접수: '25.11.28~12.5.)	區 · 지원기관 ('25.12.8.~12.12.)	市 ('25.12.15.~12.26.) (심사위: 12.30.(화) 예정)	市 ('26.1월)
예비	■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접수	■ 신청법인 현지조사 ■ 적격검토 후 市 추천	■ 市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평균점수 80점 이상 지정	市 ('26.1월)
신규 재지정 고도화			■ 市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평균점수 80점 이상 행안부 추천	행안부 ('26.2월)

※ 세부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VI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사업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적인 법적책임을 지도록 함
- 신청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고유권한이며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기 공고사항은 대전광역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 붙임
1. 사업비 편성 기준
 2. 마을기업 지정 심사 기준
 3. 신청 서식(별첨)
 4.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붙임1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 기준

* 사업비: 보조금+자부담(20%/청년 10%)

1. 예비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기준

- 주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을 권장
- 사업비 세목 구성, 사용의 적정성은 대전광역시 심사과정에서 판단

2.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2-1) 인건비(보수·일용임금)

-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관리형은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편성 가능
-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자부담)로 마을기업의 대표, 이사, 감사 등 법인 등기 부등본 상 임원에게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불가*
 - * 보조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금)가 아닌 마을기업 자체 자금으로는 지급 가능
 - 등기임원을 제외한 마을기업 회원 고용시,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
- 인건비는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함

2-2) 운영비

《일반수용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포장재는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편성하고 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
- 전문가 활용비
 - 외래강사와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지급 가능
 - 마을기업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 및 회원 등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비, 컨설팅 비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교통비 추가 지급은 불가

《임차료》 임차료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재료비》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기 타》 기타 항목*의 총합 : 총사업비의 3% 이내로 편성

* 기타 항목 : '일반수용비' 중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2-3) 건설비(시설비)

- 시설비 중 설계비는 공사비의 4% 미만으로 편성·집행 가능

2-4)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 집행은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1~2개월)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
-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의 취득은 불가
 - ※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물품 등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



[참고] 마을기업 회계 비목

보조비목 코드/명	보조세목코드/명	세부항목 및 설명
[110] 인건비	[01]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04] 일용임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광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
		6. 전문가 활용비 -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07]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09] 시설장비 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11]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420] 건설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 에 필요한 경비 2. 직영공사일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3.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430] 유형 자산	[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

**붙임2****마을기업(신규·재지정·고도화) 지정 심사 기준****○ 1회차(신규) 마을기업 / 예비 마을기업 준용**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전광역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구분	소관	사업명
1	국조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3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4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5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6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7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8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9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9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10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11	복지부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2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3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14	산림청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5	여가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6	해수부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17	해수부	어촌뉴딜300
18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9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무형유산 포함) 활용 사업
20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
21	행안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22	행안부	정보화마을
23	행안부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24	행안부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25	기타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	25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5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